

## 영화의 저작권 조건에 따른 AACR2의 적용 문제

### Problems to Adapt AACR2 to Authorship Conditions of Motion Pictures

한 무 경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박사과정)

Han, Moo-Kyung Dept. of Library Science  
The Graduate School Ewha Womans University

영화는 다양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반적으로 서명 아래 기입된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영화가 서명 아래 기입되는 관행을 살펴보고, 영화의 복잡한 저작권 조건을 검증해 봄으로써, 영화와 유사한 저작권 조건을 가지는 기타 자료의 기본기입수요에 부응하는 코드조정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다.

#### I. 서론

AACR2(1988 개정판, 이다음부터는 AACR2로 일컬어짐)의 표목, 통일표제, 참조를 부여하는 규칙2부 서론에서 “출판되는 매체에 관계없이 모든 도서관 자료에 적용된다”<sup>1)</sup>라고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AACR2를 통하여 모든 도서관 자료의 기입을 관리하는 일반원칙과 일치하면서 극적인 영화의 특수한 조건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기입의 규칙을 규정하려는 시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영화가 인쇄매체와 달리 서명기입을 하게 된 기반과 극적인 영화의 특수한 저작권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영화와 유사한 저작권을 가지는 기타 자료에서도 기본기입을 부여할 수 있는 코드를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다.

#### II. 영화기입의 역사적 고찰

##### A. AACR 이전

초기에 모든 목록규칙들은 1949년의

ALACR 등의 예에서와 같이 도서와 유사도서 자료와 관련된 것들이다. 또한, 초기에 개발된 film목록규칙은 기입의 선택보다는 오히려 기술에 초점을 맞추었다. 영화에 대한 특정 목록 규칙을 만들고자 하는 최초의 시도는 1946년 Copyright Office가 저작권이 설정된 film을 대상으로 노력한 결과 의회도서관에서 이루어졌다. 이 경우와, 그 이후 1953년의 MPF (Motion Pictures and Filmscripts)에서도 서명 아래 영화를 기입하는 관습이 지속되어졌다.

##### B. AACR

1967년에 출판된 AACR은 RDCLC, ALAC과 MPF의 3개 코드를 하나의 일치하는 책으로 만들었다.

AACR 1장에 있는 일반규칙은 다음과 같다.

① 저자 혹은 한 사람이 결정될 수 있을 때에 기입은 주요 저자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

② ...

③ ...

- ④ 저작성이 분산되고 불확정적 혹은 미상인 작품의 경우에 기입은 서명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sup>2)</sup>

이러한 원칙의 첫번째와 네번째는 직접적으로 영화의 기본기입 결정과 관련된 것이다. 그리고, filmscripts에 관한 장인 12장의 서문에 의하면 "film의 협동적인 저작성의 정도와 속성은 저자기입을 부적절한 것으로 만든다"라고 되어 있으며 규칙 200.A는 "film은 그것이 배포된...따라오는...지정에 의해(영화)...서명 아래 기입되어진다"<sup>3)</sup>라고 되어있다. 이에 대해 Lubetzky는 위의 규칙이 작품의 저작성 조건보다는 형상화된 매체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저작성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sup>4)</sup> 또한, 규칙 221.a에서도 "필름 매체를 통해 아이디어, 예술 혹은 음악을 표현하는 강사, 예술가 혹은 음악가와 같은 - 교육필름의 주요 내용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개인들"에 대해 부기입을 권장하고 있다고 서술함으로써 표현 매체로 인해 주요 저자가 무시되고 있다.

이에 대해 Lubetzky는 "A work on film"에 반대되는 "A film"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것이 필름에 대한 기본기입 선택이 매체에 의해 결정지워지며, 그래서 저작성원칙의 완전한 반전을 구성하게 되었다.<sup>5)</sup>라고 주장하였다.

### C. AACR2

1978년은 film 목록규칙에서 통합의 시대였다. AACR2의 목적은 "드물게 수집된 모든 자료의 유형과 미상의 도서관 자료를 목록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일반적인 규칙들 사용을 가능하게 해 주는 것"<sup>6)</sup>이다. 이런 통합된 개념에 대해 Riddle은 동일한 예측가능한 방식으로 조직된 목록을 보유하는 것은 사서와 이용자 모두에게 쉬운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up>7)</sup>

게다가 점점 증대되는 일련의 정보자료형태로 인해 가장 효율적인 코드는 가변적인 적용이 가능한 일반규칙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AACR2에서는 특정 작품에 대한 기본기입선택을 저작성조건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는 3가지 대안 사이에 존재한다. 개인저자기입, 단체저자기입, 서명기입 등이다. 그러므로, 영화에서 기본기입의 적절한 선택을 결정하기 위한 저작성의 조건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 III. 영화의 저작성 조건

목록에 있어서 저작성 원칙은 어느 한 작품을 위한 기본기입표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항상 주된 책임을 필요로 한다. 영화제작에는 상이한 사람과 그룹에 의해 수행되어지는 광위한 활동이 수반된다. 감독과 극작가는 영화촬영기사, 영화편집자, 제작자, 배우, 제작회사를 포함하는 창조적인 협력자팀의 일부이다.

영화의 저작성에서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하는 것은 각각의 협력자가 보유하는 책임의 정도가 제작 상황별로 다양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요즘은 많은 영화제작자들이 작가-감독-제작자와 같은 다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A. 영화제작에 있어서의 주요 협력자

#### 1. 감독

감독은 제작의 창조적 중심이다. 감독은 개념, 스토리 혹은 각본의 해석, 배역 결정, 의상 디자인 등에 개입하며, 음향혼합과 필름 편집에 이르기까지의 제작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Auteur theory"<sup>8)</sup>는 감독을 영화의 작가로 보는 이론으로 원래 영화가 예술작품이며, 그 예술적 스타일은 감독의 것이라는 견해에 기반을 두고 있다.

#### 2. 극작가

영화의 저작성 책임의 소재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극작가의 위치는 가장 민감한 것들 중의 하나이다. 극작가는 감독, 제작자, 공저자와 협력하게 된다. 일단 대본이 완성되더라도 제작기간 동안 감독에 의해서 많이 개정된다. 그래서 극작가의 저작성은 촬영각본으로 제한적일 수도 있다.

#### 3. 촬영기사

촬영기사는 극작가와 감독의 개념을 시각적인 이미지로 옮기는 책임을 진다. 적절한 상황과 분위기를, 이에 맞는 각각의 시각적 스타일을 창조하고 전체 영화를 통해 이를 유지해 나가게 된다. 촬영기사는 감독과 밀접하게 협조해 나가면서, 그의 전문성에 의거한 촬영과 관련된 선택을 하게 된다.

#### 4. 영화 편집자

경제성과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화를 구성하는 화면들은 보통 촬영단계의 장면으로부터 발췌한다. 극작가, 감독, 제작자의 시각과 일치되도록 화면과 이에 상응하는 사운드트랙을 조합, 재배열시키는 것이 영화편집자의 책임이다. 실제 상황에 따라서 영화편집자는 영화에 대해 창조성과 설득력을 가지거나, 혹은 충실히 감독의 지시를 수행할 수도 있는데, 주로 정교한 시간조절감각을 보유하게 된다.

#### 5. 제작자

제작자는 영화제작 프로젝트의 개시시기부터 완성된 제작물의 배포에 이르기까지 영화제작 프로젝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일반적으로, 제작회사를 위해 일하면서 감독, 주요 배우와 장소의 선정에 참여한다. 아울러, 예산을 관리하고 영화의 성패에 대한 책임을 지며, 촬영기간 동안은 감독과, 촬영 이후에는 영화 편집자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형성한다.

#### 6. 배우

영화배우의 역할은 카메라 앞에서 영화각본을 연기하는 것이다. 배우는 음악 연출에 있어서의 연주자에 비견될 수 있는 연기자이다. 영

화제작사에 있어서 많은 영화들이 배우들의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다. 어쨌든, AACR2에서의 기입규칙에 있어서 특별하게 언급된 유일한 개인 연가자는 음향 레코딩에 있어서의 연주자들이다 (21.1A1 및 21.23).

7. 제작회사

영화제작에 대한 개인 책임과 마찬가지로, 제작회사와 같은 단체도 책임을 가진다. 제작회사는 상업용 도서출판사와 같이 영화에 대해 제조물과 그 배포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른 한편으로, 제작회사는 영화의 내용과 형식을 결정하는데 있어, 법인 스폰서/출판사와 동등한 책임을 가질 수도 있다.

B. 영화의 속성으로서의 저작성과 책임

영화의 저작성 조건은 복잡하고(complex), 협력적(collaborative)이거나 혹은 분산적(diffuse)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AACR2 21장에서는 협력과 분산 저작성이 저작성 조건과 관련된 용어로 언급되고 있으며, 협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한 작품을 생산하기 위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동료와 같이 일하는 사람 : 공유 책임의 경우(21.6)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유형의 공헌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예술가와 작가간의 협력의 경우(21.24)와 마찬가지로 상이한 유형의 공헌을 할 수도 있다. 이 정의에서 공유책임의 작품과 혼합책임의 작품간의 차이를 알 수 있다.

1. 분산 저작성(Diffuse Authorship)

협력적 조건의 유형으로서는 事前的인 측면에서의 분산 저작성과 事後的인 측면에서의 공유 및 혼합 책임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의 분산이란 “광범위하게 산재된 또는 흩어진” “다양화된”<sup>9)</sup>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영화제작에서 주요한 제작기능은 몇몇 협력자간에 다양화되고 광범위하게 산재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분산이라는 것은 영화의 저작성을 설명하는데 적절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AACR2의 규칙 21.1C1a에서는 분산 저작성 작품에 대해 서명기본기입을 규정하고 있으며, 더 특수하게는 목록자에게 규칙 21.6C2를 참조하도록 하고 있다. 이 후자의 규칙은 분산 저작성 조건이 협력작품에 대해 3명 이상의 기여자가 있으며, 주요 책임의 속성이 이들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2명, 혹은 3명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

Michael Carpenter는 분산 저작성을 “다저작성의 형태(form of multiple authorship)”라고 인식하여, 감독, 원작자, 극작가, 제작자, 촬영기사, 배우 이들 모두가 상이한 저자와 유사한 속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sup>10)</sup>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규칙 21.6C2가 분산

저작성을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공유 책임의 작품이라는 전체 조건하에서의 분산 저작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적용에 한계가 있게 된다.<sup>11)</sup>

2. 공유 책임(Shared Responsibility)

AACR2 glossary에 의하면, “공유책임”은 다음 문장과 같다.

한 아이탬의 내용 창조에 있어서 동일한 종류의 활동을 수행하는 2명 혹은 그 이상의 사람 또는 조직간의 협력. 각각의 기여는 그 아이탬의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부분을 형성할 수도 있고, 또는 개개의 기여는 다른 것들로부터 분리되어질 수 없는 것일 수도 있다.

영화의 저작성 조건이라는 관점에서 이 정의를 살펴보면, 이 정의에 의한 “공유책임”은 영화가 상이한 기능상의 협력작품이라는 측면에서 영화의 속성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해진다. Glossary를 보면, 공유책임은 협력의 한 유형이며, “공유책임”과 “협력”이라는 용어는 동의어가 아니라는 점이 명백해진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21장에서는 이 두가지 용어를 혼동하고 있다. “공유책임의 작품”이라는 표제가 붙은 규칙 21.6은 glossary의 정의에 따르면, 협력을 통해 제작된 모든 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된다. 그 규칙이 공유책임의 작품만을 겨냥한 것이었다면, 그 영역은 이 경우의 협력에 한 종류의 활동만이 포함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명기했어야 할 것이다. 이런 설명 없이는 “공유책임”과 “협력”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된다.

추가적인 검증을 해 보면, 21.6이 협력적 작품의 적용을 위해 의도된 것이라는 전제가 훨씬 더 확실해지게 된다. 21.6A1. 영역에 관한 서술에서 발췌한 다음 문장을 살펴 보자.

규칙 21.8-21.27이 이런 사람들을 위한 표제 아래 기본기입을 하도록 하였을 때, 또한 [규칙을] 각색자, 조정자, 해설자, 레포터 등간의 공유책임의 경우에 적용시켜 보자.

21.8-21.27이 “혼합책임의 작품”하의 규칙이고, “혼합책임”과 “공유책임”이 glossary에 의하여 중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본다면, 만일 “협력”(일반적인) 혹은 “혼합책임”(특정의)이 “공유책임”의 대체물이라면 위의 인용이 보다 더 일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용어 개념상의 혼동은 21.6A1의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도 지속되고 있다.

특수한 유형의 협력을 위하여서는, 혼합책임에 관한 규칙을 참조할 것.(21.8-21.27)

만일 이런 설명이 사실이라면, 혼합책임이 협력의 특수한 유형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 설명이 틀린 것이라면, 공유책임의 작품을 위한 scope note의 일부로서 그 설명은 ‘협력’이 정확하게 ‘공유책임’과 동일한 개념을 의미한다

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칙 21.6의 술어는 그 목표를 명확히 하도록 개정되어야만 한다. 아울러, 21.6C2에서 제시된 “공유책임”의 한 특수한 유형으로서의 “분산책임”에 관한 정의 역시 명확히 파악해야 할 것이다.

3. 혼합 책임(Mixed Responsibility)

혼합책임의 작품을 위한 규칙들은 다음의 glossary 정의를 본질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혼합책임의 작품은 상이한 사람 혹은 조직이 상이한 종류의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지적 또는 예술적인 내용에 공헌하는 곳에 존재하게 된다. (예, 다른 사람에게 의해 쓰여진 작품을 개작하는 것)

이 정의를 볼 때, 최종적으로 영화를 위한 저작성의 조건과, 결과적으로 그 영화들의 기본기입 선택을 위한 기반을 발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영화제작에 있어서의 모든 중요한 요소는 여기에 존재한다. 협력자가 상이한 종류의 기능을 수행해 나간다는 사실이 그러하듯이 개인 저작성과 단체 책임이 부수적으로 따라 붙게 된다.

IV. AACR2 코드에 대한 수정 제안

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볼 때, AACR2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만 할 것은 분명한데, 그렇게 함으로써 특히 영화에 있어서 그리고 유사한 저작성 조건을 보유하는 어떤 매체에 의한 다른 작품을 위한 기본기입 선택을 가능하게 하고 표준화하게 될 것이다.

1. 약간의 변형을 통해 “21.6. 공유책임의 작품”은 보다 적절하게 “21.6. 협력작품”으로 개정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2. 현재 “21.6 공유책임의 작품”에 존재하는 것처럼, “협력” “공유책임” 그리고 “혼합책임”이라는 용어에는 어떠한 혼동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혼합책임의 작품(21.8A1)에 대한 scope note가 있는 것처럼 21.6 협력작품(위의 1을 반영하는)에 대한 정의가 서술되어야 할 것이다.

3. 현재 21.6A1의 마지막 문장은 다음과 같이 용어에 있어서의 계층적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특수한 유형의 협력을 위해서는 공유책임(21.7)[6. 참조] 및 분산책임(21.6C2)에 관한 부분과, 혼합책임(21.8-21.27)에 관한 규칙들을 참조하라.

4. 21.6에서 사용되는 “공유책임”이라는 용어는 “협력” 혹은 “협력작품”으로서 대체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5. 현재와 같이, 21.1C1a는 단지 개인저작성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작성이 미상이거나 혹은 분산된 경우이다.

만일, 개인적이라는 단어가 21.1C1a에서 파생된 것이라면, 그 규칙은 모든 미상의 저작성(21.5)과 모든 분산 저작성 작품에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21.6C2). 그러므로, 규칙 21.1C1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야 한다.

21.1C1. 그 서명 아래 작품을 기입하라... 만일 ; a) 저작성이 미상(21.5 참조)이거나 혹은 분산된 경우(21.6C2 참조)

6. “공유책임의 작품”을 위한 새로운 장은 21.6 다음, 즉 21.7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21.8 : 혼합책임”에 병행하여 “협력작품”에서의 적절한 마무리 작업을 하게 된다. 새로운 장은 또한 현재 코드 내에서 결여되어 있는 주제의 지속성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편집방향하에서 이루어진 자료와 작품”을 위한 규칙들은 협력작품 관련 조항에 선행하거나 혹은 혼합책임의 작품을 위한 규칙 다음에 오도록 해야 할 것이다.

V. 결론

본 논의에서는 영화의 다양한 저작성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AACR 코드의 조정을 시도해 보았다. 최근에는 온라인 목록의 등장으로 기본기입과 보조기입간의 차이가 거의 없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영화에 대한 KORMARC가 제정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영화의 다양한 저작성을 고려하여 그에 대한 접근점을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인 KORMARC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영화와 유사한 저작성을 가진 다른 매체(Video Recording)의 자료에도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1 AACR, Michael Gorman and Paul W. Winkler, 2d ed., 1988 rev. (Chicago:ALA, 1988)
- 2 AACR, North American Text (Chicago:ALA, 1967)
- 3 AACR (1967)
- 4 Seymour Lubetzky, *Principles of Cataloging : final report* (LA:Institute of Library Research, 1969)
- 5 Seymour Lubetzky (1969)
- 6 AACR2(1978)
- 7 Pearce S. Grove and Evelyn G. Clement, *Bibliographic Control of NonPrint Media* (Chicago:ALA, 1972)
- 8 Ephraim Katz, *The Film Encyclopedia* (NY:Putnam, 1982)
- 9 *The Random House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2d ed., (NY:Random House, 1987)
- 10 Michael Carpenter, *Corporate Authorship : Its Role in Library cataloging* (Westport:Greenwood Press, 1981)
- 11 Ruby A. Bell-Gam, Problems with the Basis for the Title Main Entry of Motion Pictures According to the AACR, *Cataloging and Classification Quarterly* 13, No. 2 1991
- 12 김정현 영화예술론 (서울:동화출판사, 1982)